

기술탈취·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활용하기

SME TECHNOLOGY PROTECTION



목차

contents

- 01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 0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I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S M E T E C H N O L O G Y P R O T E C T I O N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요

중소기업 기술 | 기술보호지원법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보호 활동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기술탈취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련의 활동

기술보호 유형

사전예방 노력

- 관리적 보안
- 기술적 보안
- 물리적 보안

공정 기술거래 노력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기술거래 계약체결

* 부당한 기술요구·기술유용금지

피해구제 조치

- 기술분쟁의 조정·중재
-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 수사신고 및 (행정)소송

핵심기술 종류

산업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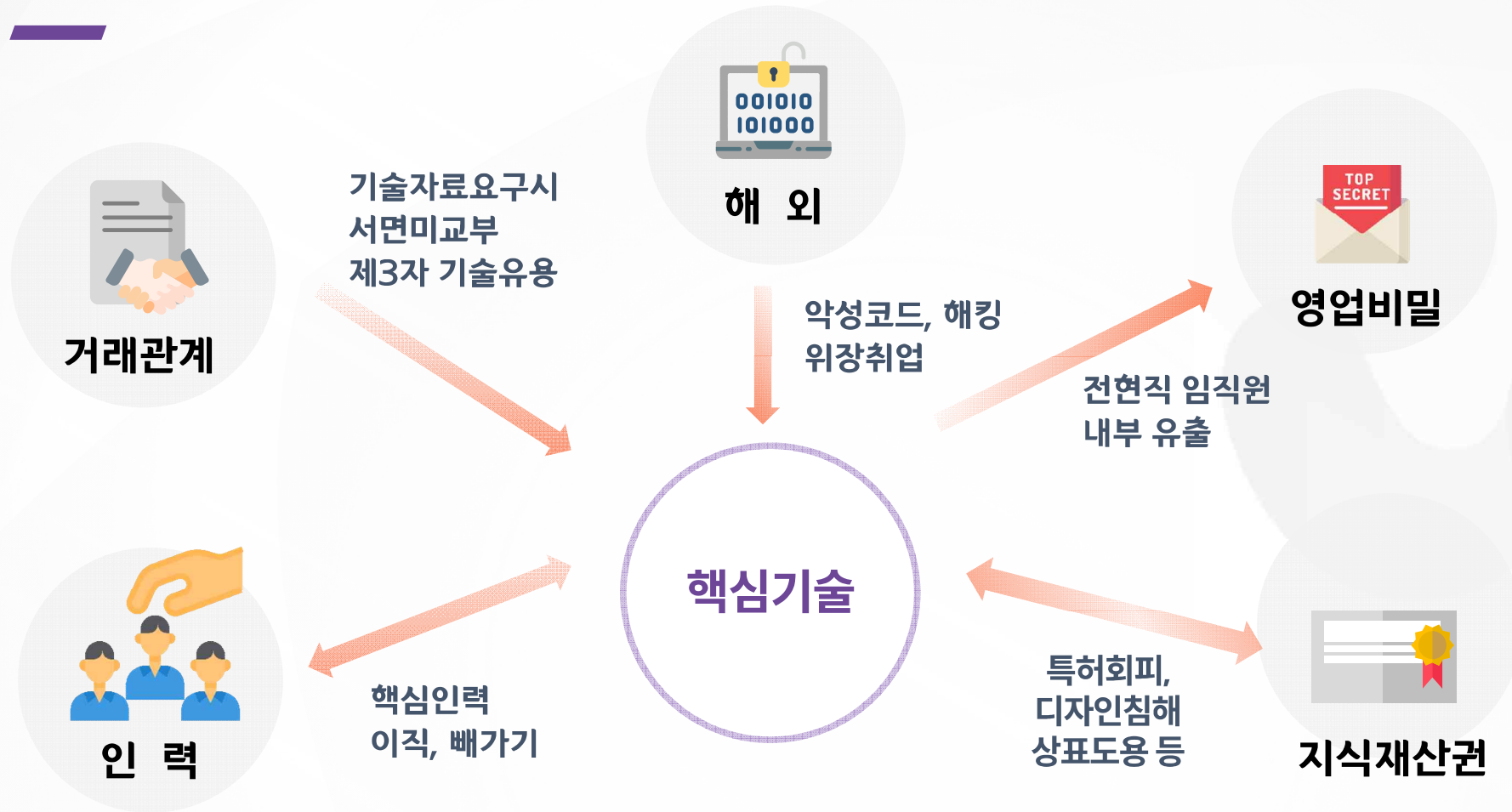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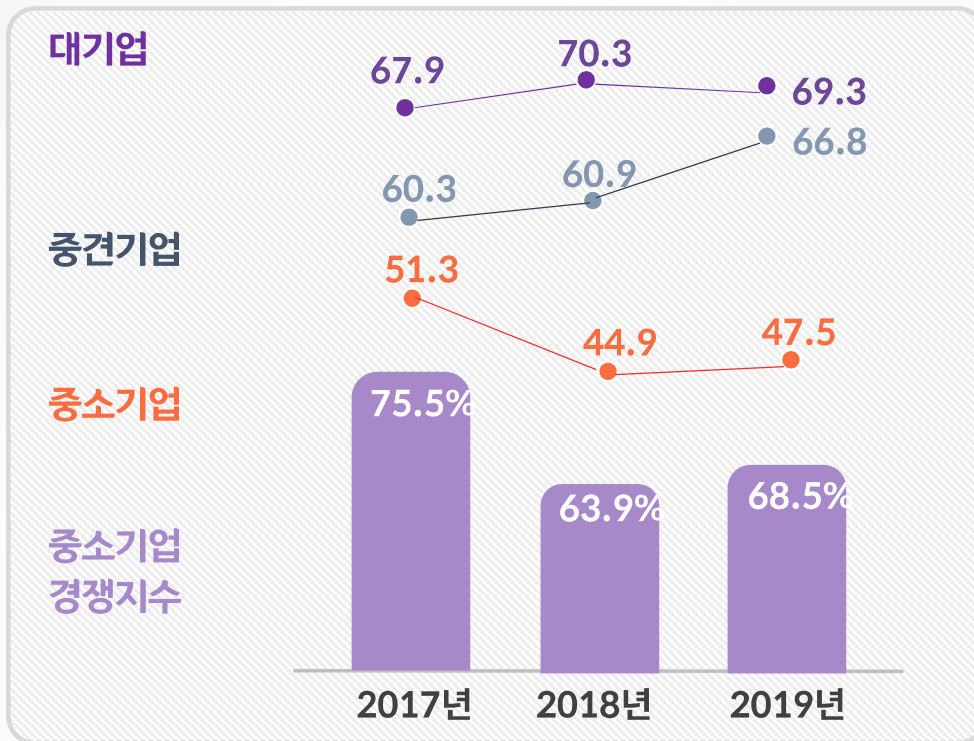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유형

1.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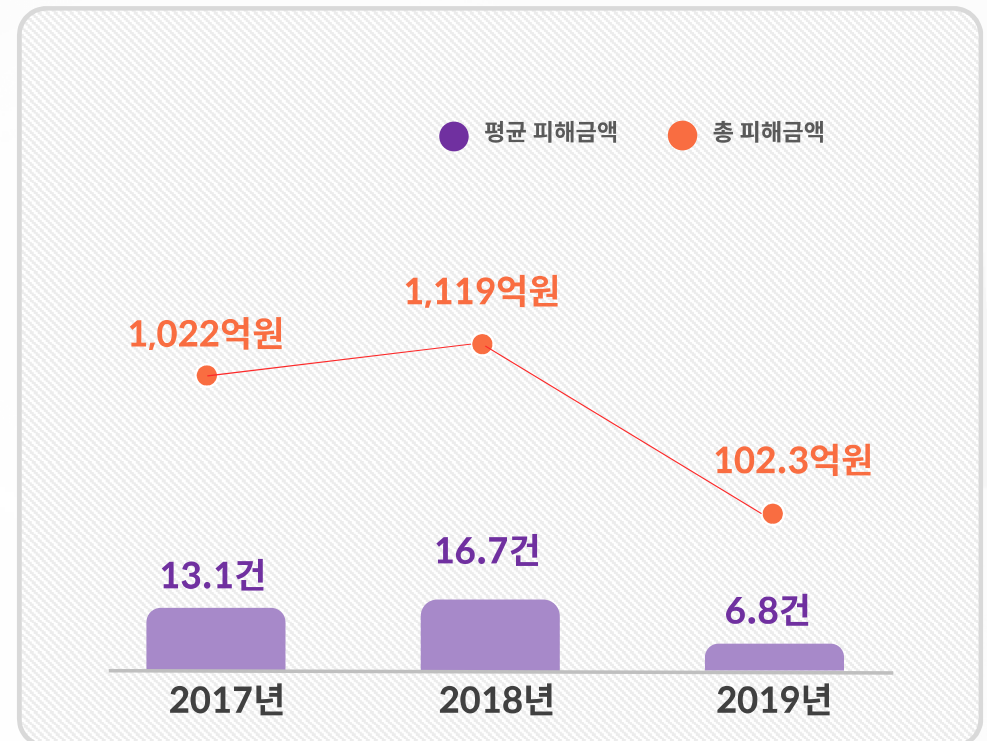
기술보호 실태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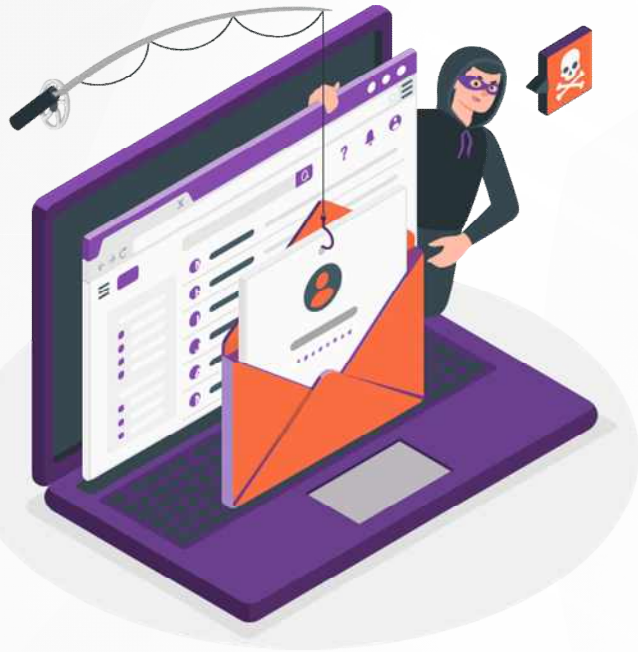


중소기업 경쟁지수 = (중소기업 역량점수/대기업 역량점수)*100

| 기술유출 피해금액



기술유출 피해 대응 전략 - 10대 핵심수칙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수립·실시

2. 보안관리 전담인력 필수지정

3.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실시

4.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5. 핵심인력 퇴직시 철저히 사후관리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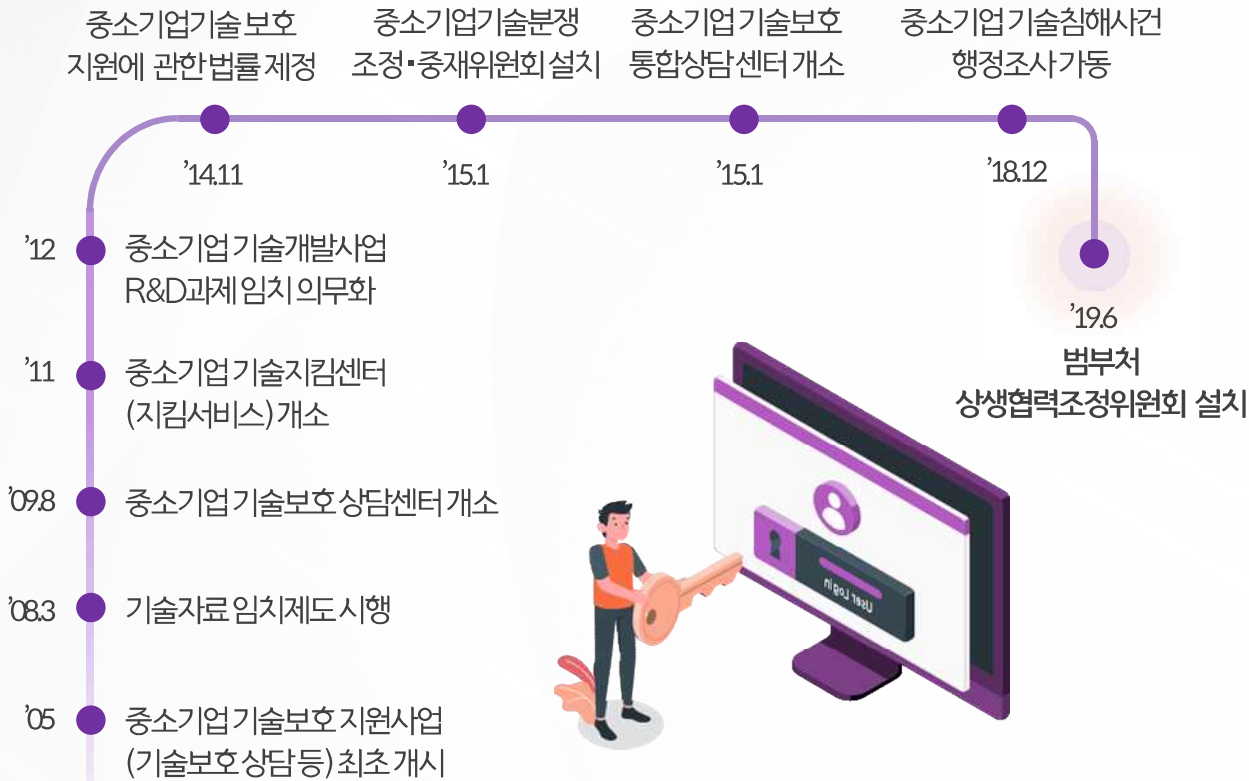
7. 중요서류는 별도보관, 반출관리

8. 중요설비·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

9.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10. 정보시스템 보안필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연혁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

* 관련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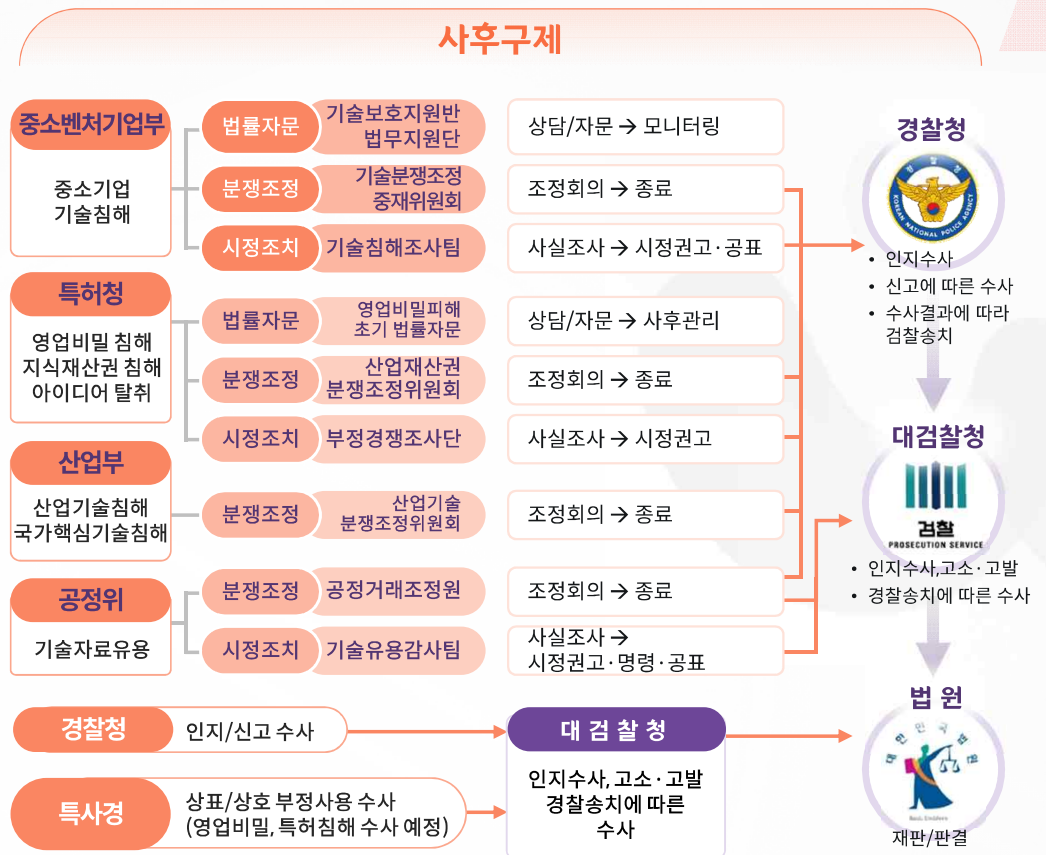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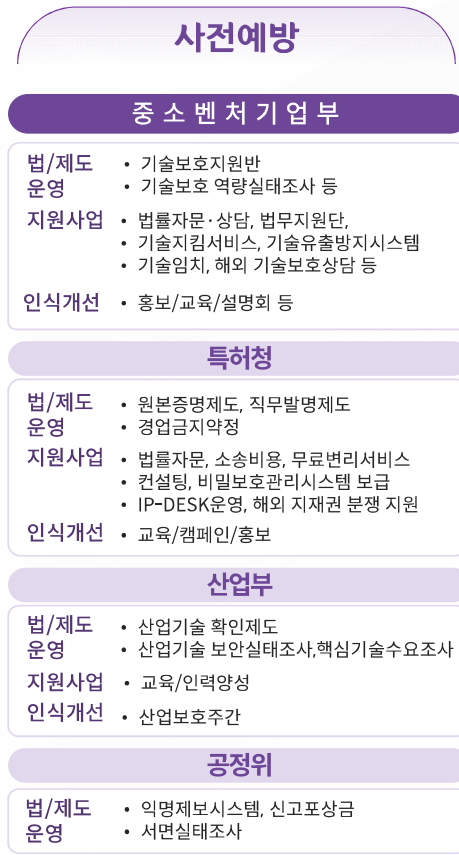
✓ 주요정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18.2, 범부처)

제2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19.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20.4, 범부처)

범부처 기술보호 지원 체계



II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S M E T E C H N O L O G Y P R O T E C T I O N



기술보호 지원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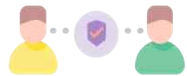
사전
예방

상담 및 자문



**통합상담
신고센터**

유선, 방문상담
(02-368-8787)



**전문가
현장자문**

보안·법률 자문
(최대10일,
3일 이내 무료)



법무지원단



**기술보호
지원반**

변호사/변리사
심층자문
(6개월 이내
30시간 무료)

기술유출분쟁 피해
중소기업 현황조사
및 전문가 상담 지원



사후
구제

증거입증지원



기술임치 테크세이프

기술개발
보유 사실 입증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



거래 단계별
증거자료 입증
(신규 5만원
갱신 3만원)

시스템지원



**기술유출방지 기술지킴
시스템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8천만원 한도내
50%지원)



24시간
보안모니터링
(무료)

조정·중재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대리인 최대 5백만원
소송비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술침해 신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조사팀
행정조사

사업문의: 통합상담센터 02-368-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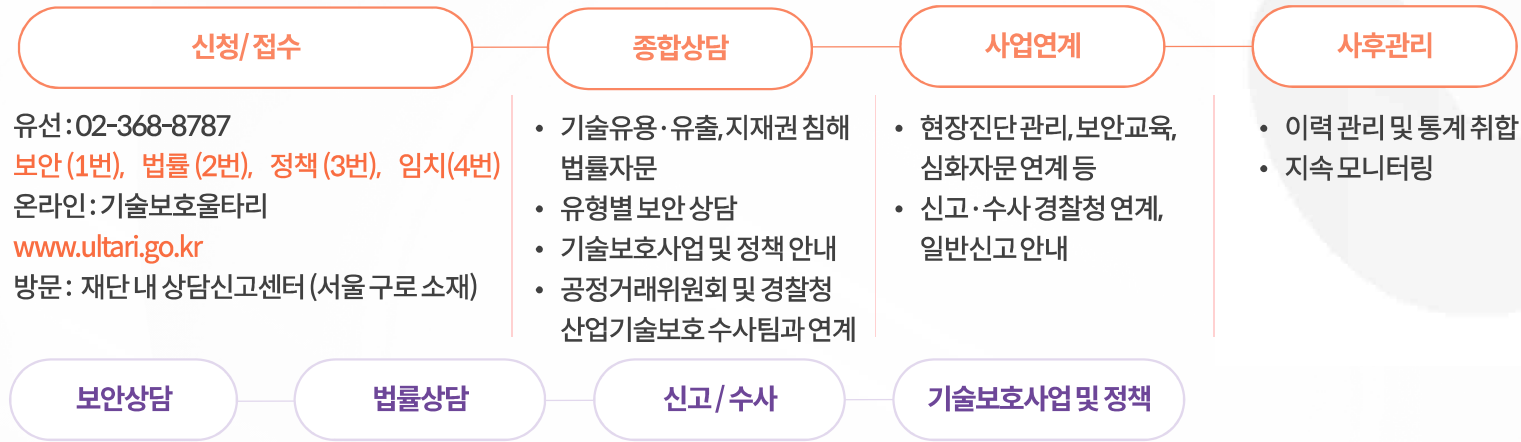
사업신청: www.ultari.go.kr(기술보호올타리)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설립 목적**
-  **지원 대상**
-  **지원 절차**
-  **상담 분야**
-  **문의**

기술보호 고충상담 및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고접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 전화: 02-368-8787
-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온라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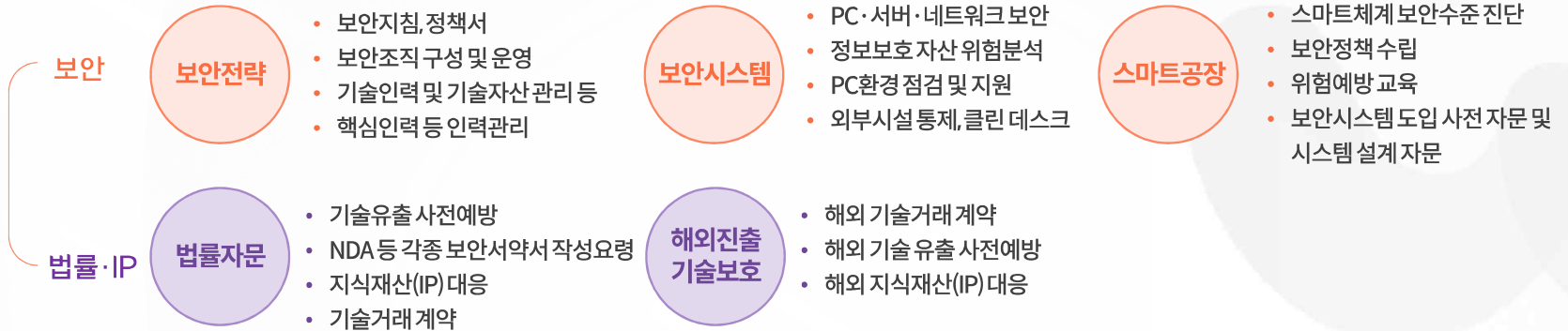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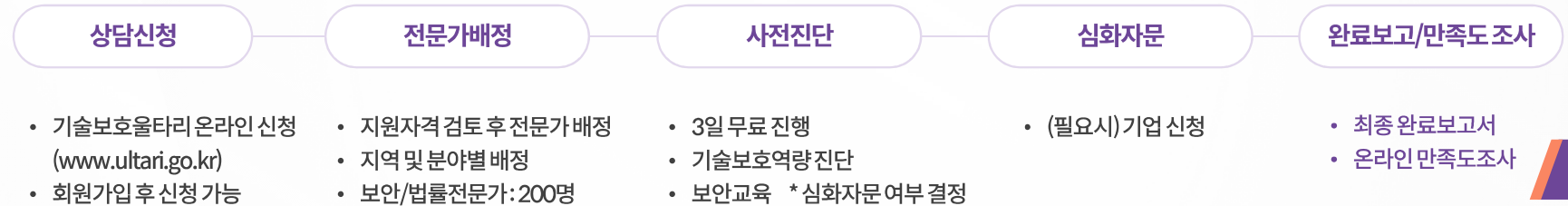
지원절차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의 현장진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 비용 : 최대 10일 이내 (사전진단 3일 무료 / 심화자문 최대 7일 가능, 75%지원, 기업부담액 75,000원/일)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신청기간문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한 심층자문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 최대 **30시간**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6개월이내)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법률전문가 일대일 매칭 및 중장기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
-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



연중 상시 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87

기술보호지원반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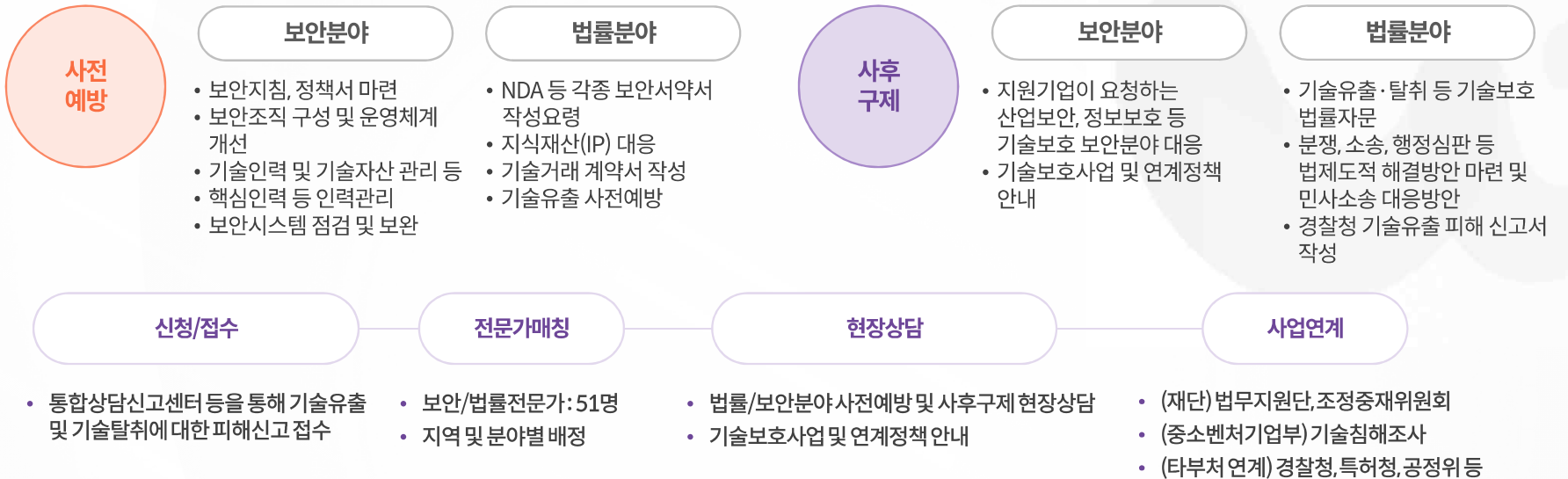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후속지원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핵심 기술정보를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 시점 및 보유 사실을 입증

이용대상

- 타업체의 모방이 우려되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보유기술에 보안수준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 거래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 기술자료의 유실이나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

임치대상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보고서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비용

- 일반기업: 신규(1년) 30만원, 갱신(1년) 15만원 (사용인 편집: 5만원, 임치물 추가: 5만원)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1/3 감면):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시 수수료 감면(50%): 신규계약 5년 체결 시 900,000원 → 450,000원



임치절차

신청서 제출

임치물 제출

임치계약(전자) 서명 및 체결

임치증서 수령

임치기술 활용 지원

임치기업 대상으로 임치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무료, 약 200만원), 보증수수료 감면 (0.3~0.5%) 등

기술자료 거래등록시스템(Tech Safe)

-  사업 개요
-  이용 대상
-  거래 단계 별 대상물
-  비용
-  문의

기술자료 거래기록등록시스템(TTRS)와 기술지킴이(임치제도)를 포함한 온라인·오프라인 기술금고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기술개발

기술개발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정보관리

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 등

거래교섭

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이메일, 녹취파일 등

실제거래

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

침해대응

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

신규	300,000원
연장	150,000원
비고	1년/건, VAT별도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신규	50,000원
연장	30,000원
비고	6개월/건, VAT별도

* 할인대상기업은 1/3 감면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http://ts.kibo.or.kr>)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맞는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물리적
보안솔루션

영상감시

출입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 물리적보안시스템구축의 경우 지문인식기·카메라등 단순 장비구입비용은 기업부담금에 해당

기술적
보안솔루션

네트워크

서버

PC등



사업비최대50%
(4천만원한도)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 문서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해외
연계과제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등

지원사례

- G사 연구소장은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술자료를 클라우드 웹하드에 무단 복사 후 경쟁업체에 유출 시도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시스템으로 차단함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37 (신청기간: 매년 1월 기술보호 울타리에 기술보호지원사업 공고 참조)
* 신청페이지: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서버, 임직원PC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시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침입시도를 분석·차단

- 보안전문가의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방화벽에서 발생한 해킹시도/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해 트래픽 정밀분석
-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IP 실시간 차단 및 이상징후 통보

서비스 내용



문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02-3489-7050~7053), monitor@kaits-info.or.kr

* 신청페이지: 기술보호올타리 (<https://www.ultari.go.kr/>)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

내부임직원에 의한 핵심기술자료가 USB, E-mail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되는 행위를 예방 하도록 솔루션 무상 지원 및 이상징후통보

- USB, E-mail, 출력물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 통제 및 이력관리
- 기술유출 의심행위 발생 시 이상징후 통보
- 유선, 원격접속을 통한 보안정책 설정 등 기술지원

※ 기업당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30개 라이선스 무상제공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 무상 지원, 이상징후 통보 및 기술지원

- 악성코드,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무상제공
- 실시간 탐지 및 차단으로 정보자산 보호
- 기업에 유입된 악성코드 채증 및 분석 지원

※ 기업당 악성코드탐지솔루션, 랜섬웨어탐지솔루션 각 30개 라이선스 무상제공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분쟁 중소기업의 신속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23~28조

사업 개요

효력

-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합의실패시 중재 또는 소송 필요

장점

- 전·현직 판사 및 변호사 등: 23명, 기술분야 전문위원: 27명
- 3~5명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합의 도출 또는 중재부의 판정
- 재판대비 짧은 소요기간(조정: 3개월, 중재: 5개월)
- 저렴한 비용(조정: 11,000원~55,000원/중재: 22,000원~)

지원 내용

-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에 소요되는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최대 5백만원) 지원
- [소송비용] 불성립·중단된 조정사건의 소송 연계 시 소송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심사 필요
- [행정심판비용]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지원심사 필요

지원 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조정·중재부 구성 (3~5인)

답변서 및 보완서 제출

조정·중재부 회의

조정종결·중재판정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신고

-  **개요**
-  **신고대상**
-  **신고요건
주요내용**
-  **행정절차**
-  **문의**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 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조사팀에서 행정조사

기술유출 및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침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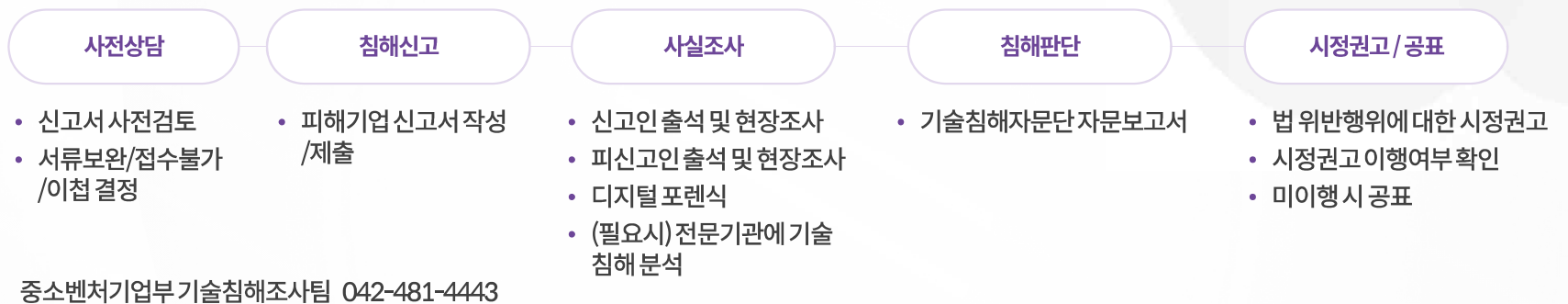
- 부정한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
- 고의 취득·사용·공개(제3자포함)
- 종과실 취득·사용·공개(제3자포함)

영업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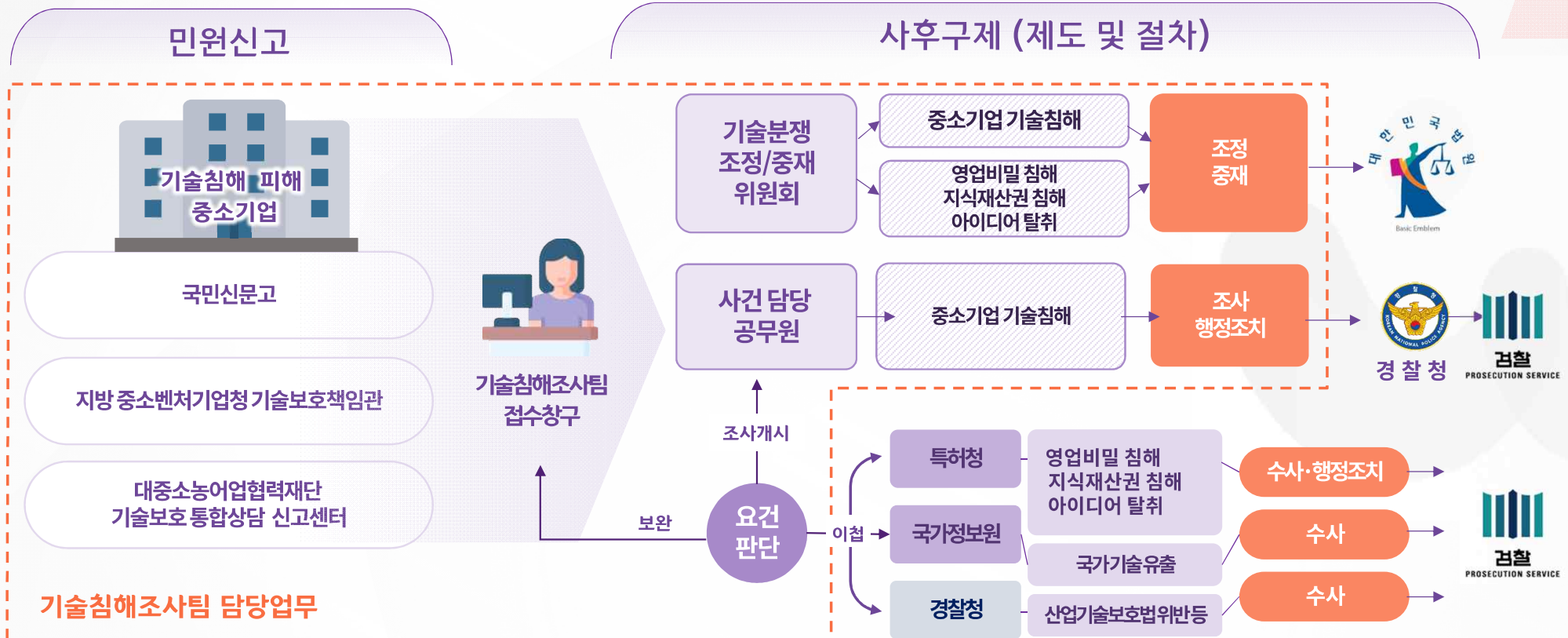
- 비공지성
- 비밀관리성
- 경제적유용성

침해발생시점

- '18. 12. 13일 이후 발생
- 과거에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18. 12. 13일 이후까지 지속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신고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조사팀 042-481-444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III.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운영기관	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p>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p>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 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전문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법무지원단	변호사 또는 변리사 1:1 매칭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 (30시간/6개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개발 보유사실 입증	신규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 창업, 벤처 등 1/3 감면, 부가세 없음
	기술임치 활용지원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무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최대 50%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부가세별도)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기술지킴서비스	해킹, 내부정보 유출, 악성코드 등 24시간 이상징후모니터링 지원	보안관제 : 장비보유 시 무료 내부정보유출방지 : 30개 라이선스 무료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 30개 라이선스 무료
	기술지킴이(기술자료임치제도)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개발 보유사실 입증	신규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 창업, 벤처 등 1/3 감면, 부가세 별도
	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등록시스템)	기술거래 과정 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증거로 활용	신규 5만원/6개월 연장 3만원/6개월 ※ 부가세 별도



사업 신청·접수방법(☎02-368-8787)

III.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기술보호올타리 <https://www.ultarigokr>

